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기술 7급] 채용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임용예정인원 (17개 직위, 총 31명)

채용분야	응시코드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용예정직급	채용기간
공업 (13명)	공-H1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공업 7급 (일반임기제)	임용일부터 2년
	공-H2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청주시)		
	공-H3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시)		
	공-H4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시청(충주시)		
	공-H5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시)		
	공-H6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서산시)		
보건 (8명)	보-H1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보건 7급 (일반임기제)	임용일부터 2년
	보-H2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청주시)		
	보-H3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시)		
	보-H4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시청(충주시)		
	보-H5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시)		
	보-H6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서산시)		

시설 (10명)	시-H1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시설 7급 (일반임기제)	임용일부터 2년
	시-H2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청주시)		
	시-H3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시)		
	시-H4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시청(충주시)		
	시-H5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시)		

※ 근무실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산업안전보건	기술직 7급 (직렬 공통)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근로감독관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9. 25.) 기준]

- 채용 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관련 분야 경력 및 학위) 및 우대요건(자격증 포함)은 [붙임2]의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고

직위별 요건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선택 응시>			
채용분야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산업안전보건		
일반임기제 기술 7급	응시 자격 요건	경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분야 경력 및 학과(학위)	
		채용 직렬	관련분야 경력
		관련분야 학과(학위)	
		공업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물리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 화학공학, 안전공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시설	산업안전 (일반토목, 건축) 토목공학, 건축공학, 안전공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보건	산업안전 (보건) 의학, 보건학, 산업보건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학위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응시** (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①/학위② 중 하나만 선택)
 - ↳ 경력,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9. 2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 업무 및 주 근무시간 등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다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소유자가 자격증 관련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경우 다음 서류로 업무 수행 시간 및 내용의 구체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①사업자등록증, ②고용노동부 지정서(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③사업장별 용역계약서, ④대상 사업장들에서 발행한 일자별 용역실적(수행시간 및 수행내용)이 기재된 용역수행확인서, ⑤ 기타 관련분야 수행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등((①~⑤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 강의경력 제외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제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 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 [예] 관련분야 '공무원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분야 학위(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 9. 1.) 기준]

우대요건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종류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학위별 차등 우대)
------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 2]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 9. 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종류별 차등 우대)
 - ※ 자격증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다음의 관련 분야 자격증. 단, 기능사 자격증은 우대 제외
 - ※ 건축사 자격증 우대 인정([시설주사보 응시자에 한함](#))

채용직급	관련분야 자격증
공업7급 (일반임기제)	•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 정비), 기사·산업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기술사(전기응용,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산업기사(화약류제조, 화공, 가스, 화학분석,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보건7급 (일반임기제)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타(산업보건지도사)
시설7급 (일반임기제)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타(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응시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학위별 차등 우대)
 - ※ 관련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학위별 차등 우대)
 -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직무 전문성(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증빙접수>	최종합격자 발표
'25. 8. 19.(화) ~9. 1.(월)	'25. 8. 27.(수) ~9. 1.(월)	심사: 9. 16.(화) 발표: 9. 18.(목)	'25. 9. 24.(수) ~9. 25.(목)	'25. 9. 29.(월) (9. 29.(월) ~10. 13.(월))	'25. 10. 31. (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www.moel.go.kr/local/daejeon)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5. 8. 27.(수)~9. 1.(월)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빠른등기) 접수**
 - ※ **등기 접수증**을 담당자 메일(haksookim@korea.kr)로 제출(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당일 제출)
 - ※ **겉봉투 표지**는 본 공고 마지막 페이지 "**서식(봉투표지 양식)**" 활용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불가**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2층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채용담당자 앞(일반임기제 ○○7급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본
 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단면인쇄(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모아찍기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문의전화: 042-480-6226, 042-480-6242, 042-480-6217

나. 제출서류 상세 설명내용은 "붙임3"(제출서류 안내) 참조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1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기관 발급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증빙서류 등 제출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2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필수 제출
개별 (해당자에 한함)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별지 제8호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별지 제9호서식
	소득금액증명 1부	
	4대 사회보험(중 1개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외 학위 진위 확인을 위한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공통 (필수 제출)	신원진술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 제출 방법: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내 예정

※ 증빙서류 등 제출기간: '25. 9. 29.(월) 14:00~10. 13.(월) 18:00 예정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응시원서는 17개 직위 중 1개의 직위만 지원할 수 있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25. 8. 19. 8개 청(대표지청) 합동으로 채용공고를 시행하므로 각 청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 경력, 학위 기준을 중복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중복 지원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 지원 건수가 무효화 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누락 및 착오 기재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면접시험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조화·확인할 예정 이오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안내 공고 시 증빙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포기자로 간주되어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aksookim@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증빙서류를 통해 평가에 반영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이 무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5. 11월 예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일부터 2년
※ 근무실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호	66,591	31,956

* 연봉액은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1.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01 홈택스 로그인
공통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신청 후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원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확립자속 가입 및 과세특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① 공업 분야

채용분야	응시코드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용예정직급
공업	공-H1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공업 7급 (일반임기제)
	공-H2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청주시)	
	공-H3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시)	
	공-H4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시청(충주시)	
	공-H5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시)	
	공-H6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서산시)	

주요 업무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근로감독관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산재예방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에 필요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경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 분야: 산업안전(기계, 전기, 화공) ☞ 관련 학과: 물리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 화학공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학위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종류별 차등 우대) ☞ 관련 자격증: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전기, 위험물, 가스) 기사·산업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전기, 전기공사, 화약류제조, 화공, 가스, 화학분석,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	--

[2] 보건 분야

채용분야	응시코드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용예정직급
보건	보-H1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보건 7급 (일반임기제)
	보-H2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청주시)	
	보-H3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시)	
	보-H4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시청(충주시)	
	보-H5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시)	
	보-H6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서산시)	

주요 업무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근로감독관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산재예방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에 필요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경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의학, 보건학, 산업보건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학위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종류별 차등 우대) ☞ 관련 자격증: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타(산업보건지도사)	

③ 시설 분야

채용분야	응시코드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용예정직급
시설	시-H1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시설 7급 (일반임기제)
	시-H2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청주시)	
	시-H3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시)	
	시-H4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시청(충주시)	
	시-H5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시)	

주요 업무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근로감독관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산재예방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에 필요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경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 분야: 산업안전(일반토목, 건축) 👉 관련 학과: 토목공학, 건축공학, 안전공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학위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종류별 차등 우대) 👉 관련 자격증: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소방설비), 기타(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①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학위, 경력, 논문 등)일 경우 반드시 공증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 필수서류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부착: 7,000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상단 오른쪽 자필서명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필수서류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필수서류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분량은 A4용지 요약서 1매 + 본문 4매로 작성(총 5매 이내) ○ 자필 서명 필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 <u>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제출된 학위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대학 담당자 이름, 이메일 반드시 기재)</u>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필수서류 ☞ <u>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u>	○ <u>외국학교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필수 첨부</u> ○ <u>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u>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임용 전까지 제출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u>해당자에 한함</u>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인지 여부 확인 용도 추가 제출

② 면접시험 합격(예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응시자격요건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

1.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 필수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되,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2.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 시 별지 제9호서식 활용)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자 필수 제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소유자가 자격증 관련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경우 아래 서류로 업무 수행 시간 및 내용의 구체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①사업자등록증, ②고용노동부 지정서(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③사업장별 용역계약서, ④대상 사업장들에서 발행한 일자별 용역실적(수행시간 및 수행 내용)이 기재된 용역수행확인서, ⑤ 기타 관련분야 수행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등(①~⑤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필수 첨부

3. 관련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증명서 사본 1부(우대요건 관련)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외국학교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필수 첨부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등 학위논문 증빙자료(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사본 각 1부 제출
4. 소득금액증명 : 해당자에 한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였거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에 해당 기관의 '직무성과'를 기재한 응시자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전국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 가능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경력'에 해당하는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을 모두 제출('25년은 제출 불필요)
5.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였거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에 해당 기관의 '직무성과'를 기재한 응시자 ○ 고용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 정보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 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 선택 ※ 회사의 폐업·파산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대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 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7. 해외 학위 진위 확인을 위한 서약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 자필 서명 필수

② 신원조사 목적 증빙서류 제출

※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제출 방법은 추후(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신원진술서(총 3쪽) [별지 제11호서식]	○ 경찰청 제출용이므로 내용 누락 금지 ○ 워드 기재 가능(단, 서명은 반드시 자필) ○ 단면 출력, 동일한 사진(3cm×4cm 또는 3.5cm×4.5cm) 1매 부착 또는 같은 규격의 사진 파일 첨부 후 컬러 출력(흑백 불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 신원조사용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4.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도록 하고 변경사항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 반드시 상세로 발급하고, 기본증명서가 2쪽 이상일 경우 마지막 쪽 누락 없이 전부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본인 기준 발급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제출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제출
9. 범죄기록증명원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귀화자 / 영주권자 / 해외 장기 체류자(3개월 이상)의 경우 귀화 전 국가 / 영주국가 / 체류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제출 *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도 제출 필요

※ 1~9번 자료 제출 근거 법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